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07

발의연월일: 2023. 2. 23.

발 의 자:이장섭·홍익표·윤준병

김두관 · 김의겸 · 김영배

임호선 • 박광온 • 이학영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전기공사공제조합'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에 근거 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음.

현행법 제21조(임원)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"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·후생을 위한 공제사업"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

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"「보험업법」의 적용배제"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9조의3 신설, 안 제19조및 제21조).

법률 제 호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「보험업법」의 적용 배제)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19조제2항 중 "19명"을 "28명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중 "15명"을 "24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3(「보험업법」의 적용
	배제)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
	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
	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
	하지 아니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구성 등) ① (생	제19조(이사회의 구성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	②
1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	<u> 28명</u>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임원) ① 조합에는 다음	제21조(임원) ①
각 호의 임원을 둔다.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비상근이사 <u>15명</u>	3 <u>24명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